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운영규정

2017년 2월 25일 제정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 정관 제9조에 따라 조합 운영 기준을 세워 조합을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서대문 구립 산마루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위탁 사업
②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③ 지역의 육아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
④ 공동육아의 사회제도화를 위한 사업
⑤ 사회적경제 조직 및 풀뿌리자치단체와 연대 사업
⑥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⑦ 기타 공동육아를 위한 사업

제3조(연대)
①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과의 관계
1. 조합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기관회원 지위를 가지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고 지속적인 연대와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2. 조합의 직원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회원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조합에서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보육환경과 생활, 교육내용, 부모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한다.

② 조합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및 풀뿌리자치단체와 연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장 조합원

제4조(가입)
① 소비자조합원은 어린이집 입소순위에 따른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 접수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직원조합원은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 직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후원자조합원, 자원봉사자조합원의 가입은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④ 조합원이 다른 유형의 조합원으로 변경하고자 희망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권리)
① 소비자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자녀를 조합이 운영하는 시설에 맡길 권리
2. 조합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3. 회의에서의 의결권과 선출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직원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이 운영하는 시설에 근로를 제공할 권리
2. 조합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3. 회의에서의 의결권과 선출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후원자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에 금전 혹은 현물 등으로 후원할 권리
2. 회의에서의 의결권, 선출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④ 자원봉사자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에 노무를 제공할 권리
2. 회의에서의 의결권, 선출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의무)

① 소비자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와 그 밖의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2.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에 따른 출자금 및 경비를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을 지킬 의무
4. 조합원교육과 행사에 참석할 의무
5. 각종 소위원회, 소모임 활동에 참석할 의무
6. 조합에서 정하는 각종 행사에 가족이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② 직원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와 그 밖의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2.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에 따른 출자금 및 경비를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을 지킬 의무
4. 조합원교육과 행사에 참석할 의무
5. 교직원소위원회, 소모임 활동에 참석할 의무

③ 후원자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2. 정관에 따른 출자금을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을 지킬 의무

④ 자원봉사자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2. 정관에 따른 출자금을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을 지킬 의무

제3장 이사회

제7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도움이사
3. 배움이사
4. 살림이사
5. 어울림이사
6. 알림이사
7. 뚝딱이사
8. 어린이집 원장
9. 교사회이사
10. 지역사회이사

② 이사회는 매년 1월 이내에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받는다.
③ 소비자조합원은 어린이집 방장을 이사로 한다.
④ 이사회의 임기는 총회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다.
①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③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④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⑤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⑥ 기본 자산의 취득과 처분
⑦ 후원자조합원, 자원봉사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⑧ 조합원 교육, 친목 도모에 관한 사항
⑨ 조합 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⑩ 어린이집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⑪ 지역연대와 관련한 사항

제9조(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서면 등을 통하여 개최공지를 한다. 이사들은 이사회 개최 8일 전까지 안건을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③ 이사회 서기는 이사 중에서 순차적으로 작성한다.
④ 이사회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 참관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조합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움, 배움, 살림, 어울림, 알림, 뚝딱, 교직원 소위원회를 두고 각 이사가 장이 되어 운영한다.
② 소비자조합원과 직원조합원은 1개 이상의 소위원회에 참여한다.

③ 이사회는 필요시 소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④ 소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제11조(소위원회의 역할)
① 도움소위원회
1. 소모임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2.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지원한다.
② 배움소위원회
1. 조합원의 교육을 수행하며, 교사회와 협력하여 공동육아의 내용과 방법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지역사회에서 공동육아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제안할 수 있다.
3.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주제를 선정한다.
③ 살림소위원회
1. 조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2. 매월, 반기별, 연간 결산안 및 연간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3. 각종 비용 및 후원금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④ 어울림소위원회
1. 조합원 간의 결속과 단합을 위한 친목도모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⑤ 알림소위원회
1. 조합의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⑥ 뚝딱소위원회
1.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는 시설 관련 사항들을 지원한다.
⑦ 교직원소위원회
1. 교직원소위원회는 직원조합원으로 구성한다.
2. 교직원소위원회는 자체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제12조(특별위원회)
① 조합은 운영에 필요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5장 행사

제13조(주요 행사)
① 조합의 주요행사는 총회, 조합원교육, 조합설명회, 산마루잔치, 가을운동회, 기타 연대활동으로 한다.
② 주요행사에 불참시에는 대체 참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
① 총회는 협동조합의 최종 의결단위이다.
② 총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한 달 이내에 아마 활동에 참여한다.

제15조(조합원교육)

① 모든 조합원은 조합원 교육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신입조합원교육) 신입조합원은 조합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입조합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당해 신입조합원교육이 진행된 후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거나 차기년도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전체조합원교육) 모든 조합원은 공동육아정신의 공유와 건강한 자녀교육, 조합원 교양 증진을 위해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조합원교육에 연 2회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④ (이사진교육) 이사회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이사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조합원교육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정해진 관련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6조(조합 설명회)

① 조합은 홍보 및 조합원 확장을 목표로 예비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② 교육의 내용은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 우리 조합에 대한 안내 등으로 한다.

제17조(잔치)

① 조합은 조합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4월 경 '산마루 잔치'를 개최한다.

② 그 외 조합원간 친목 도모와 나눔 문화 장려를 위해 운동회, 바자회, 벼룩시장 등의 잔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연대활동)

①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주관 '공동육아한마당'은 격년으로 참가한다.

② 서대문 보육 포럼 등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한다.

제19조(방모임)

① 조합은 조합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참여보육의 장으로 방모임을 진행한다.

② 방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불참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방모임은 격월로 진행한다. 단 연 1회는 아빠 방모임으로 진행한다.

④ 방모임이 끝난 후에는 방모임 일지를 반드시 작성하고, 1주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유한다.

제20조(소모임)

① 조합원들의 친목 도모와 교류를 위해 다양한 주제로 소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1조(출자금)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좌 1좌의 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② 출자금은 부동산 구매나 임대료의 보증금 등 조합이 필요한 목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자금은 다음 계좌에 납입한다.

신협 131-018-642067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제22조(가입비)
① 조합원은 처음 조합에 가입할 때 가입비 1만원을 납부한다.
② 가입비는 조합의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다.
③ 가입비는 조합을 탈퇴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④ 조합을 탈퇴한 후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가입비는 다음 계좌에 납입한다.
신협 131-018-642050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제23조(조합비)
① 소비자조합원과 직원조합원은 조합비를 매달 1만원씩 납부한다. 단, 두 자녀 이상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아이당 매달 5,000원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② 조합비는 조합원 교육, 조합 행사, 지역사업,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기관회비 등 조합의 각종 행사와 사업 활동을 하는데 사용된다.
③ 조합비는 선납할 수 있다.
④ 신입 조합원은 가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당월 조합비를 납부한다.
⑤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에는, 탈퇴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당월 조합비를 납부한다.
⑥ 조합비는 다음 계좌에 납입한다.
신협 131-018-642050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제24조(공적기금)
① 조합의 공공성 강화와 발전을 위한 공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조합의 발전을 위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연말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다.
1. 조합의 지역사업 후원을 위해 기부
2.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학습자료, 시설 등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기부
3. 교사회의 복지수준 향상 지원을 위해 기부
4. 공동육아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성을 가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
5. 기타 지역 및 사회 전반의 공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
② 조합의 발전을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25조(기타경비) 조합은 필요에 따라 소정의 경비를 거둘 수 있다.

제26조(지출 관리)
① 업무 관련 지출은 조합 명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선 지출한 후 적격증빙자료(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영수증)를 갖추어 회계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정산한다.

제7장 문서 관리

제27조(문서의 보관)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총회 자료집, 총회 회의록, 정관, 규정, 규칙 모음 - 영구
2. 이사회 회의록 - 5년
3. 각종 위원회 회의록 - 5년
4. 재정자료(현금출납부, 각종 결의서 및 영수증, 회계보고서 등) - 10년
5. 수발신 문서 - 5년
6. 회지, 자료집 - 영구

② 보존기간이 완료된 문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폐기처분 한다.

③ 문서 관리는 이사장과 살림이사가 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관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 정관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규정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해석의 권한) 본 규정의 일반적 해석은 이사회에 의하며, 최종적 유권해석은 총회에서 정한다.

[별지 서식 1] 조합 가입 신청서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가입 신청서

본인은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의 지향과 목적에 동의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유형 (택 1) : 소비자 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출자좌수 : _____좌

성 명	(아동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E-mail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법인 운영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 식별
- 조합원 명부 작성 및 관리
- 각종 사업 안내 및 연락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조합원 탈퇴시 파기함, 단 출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내부규정에 의해 최대 2년간 보존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정보는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의 사유로 필요시 아래의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가. 정보제공 기관
- 설립인가 관련 : 중앙행정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법인등기 관련 :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관련 :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나. 정보제공 범위 : 성명, 주소(임원의 경우 등록기준지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각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별지 서식 2] 출자금 납입 증명서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 납입 증명서

아 동 명 _____
가 입 자 _____
출자 좌수 _____ 좌
출 자 금 _____ 원

위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인)

[별지 서식 3] 가입비 납입 증명서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가입비 납입 증명서

아 동 명 _____
가 입 자 _____
가 입 비 _____ 원

위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인)

[별지 서식 4] 조합 탈퇴 신청서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탈퇴 신청서

본인은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신청합니다.

이해관계자 유형 (택 1) : 소비자 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성 명	(아동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E-mail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별지 서식 5] 출자좌수 감소 신청서

NO

출자좌수 감소 신청서

□ 조 합 원 이름 : (아동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본인은 다음의 사유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출자금 잔액 :

□ 감소신청금액 :

□ 감소 사유 :

※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귀하